

월최대

30만원으로
인상됩니다!

'20.1월부터
차상위계층까지



수급대상자

- 만 18세 이상의 등록된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(중전 1급, 2급, 3급 중복)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(소득과 재산 합산액)이 선정기준액* 이하인 분

* 선정기준액(2020년)

-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122만원
-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195만 2천원

지급금액

- 기초급여액 월 30만원으로 인상* ('20. 1월부터 시행)
- *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그 외 (차상위 초과~소득하위 70%) 254,760원
- 부가급여액 소득계층별 차등 지급

준비서류

- 본인(중증장애인) 신청 시

신청자의 신분증, 본인명의 통장사본

- 대리신청 시

대리인 신분증, 중증장애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

*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신청 필요없음

신청장소 읍·면·동 주민센터

문의처 주소지 읍·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· 보건복지 상담센터

위험할땐 119
힘겨울땐 129